

「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」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역주민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미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

야시장 사업 개요

- 시 기 : 2024. 1월 ~ 2028. 12월 / 매주 금·토, 연간 총24회 개최
- 장 소 :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일원 예정
- 예 산 : 위탁비 200,000천원(행사·운영·인건비 등)
- 내 용 : 공연, 체험부스, 먹거리 매대 등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(추진근거) 「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」 제47조 제2항

○ (필요성)

- 야시장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민간 위탁을 할 필요가 있음

다. 위탁사무 개요

○ (위탁기간) 2024. 1월 ~ 2028. 12월

○ (개장 전)

- 운영(안전, 운영, 홍보) 계획 및 체험·공연행사 기획
- 야시장 홍보 및 운영요원 선발
- 야시장 환경(공연 무대, 간판, 경관조명, 포토존) 조성

○ (야시장 운영)

- 야시장 구역 정비(기존 매대·적치물 정리, 차량 통제)
- 매대 위치 지정
- 체험·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셀러 대상 위생·판매 수칙 교육
- 관람객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, 화재 및 무질서 등 비상 상황 대응
- 시장 종료 후 환경정비(쓰레기 청소 등)

○ (종료 후)

- 정산 및 성과 측정·보고

라. 수탁자 선정방식

○ (모집방법) 공개모집

- 시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수탁자 모집
- 대상 선정 위원회를 통한 선발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7조,
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,
「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」 제47조,
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2023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일원에 열릴 예정인 야시장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야시장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구비한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시장활성화를 통한 상인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올해 야시장 추진이 한차례 무산되었으므로 향후 성공적인 야시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연, 체험부스, 먹거리 매대 등 야시장 활성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존 상인들과 협력체계 구축, 안전대책 수립 등 야시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한 지도·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또한, 「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」 제47조 관련 사업 추진 시 위탁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